

2022년도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강릉문화재단

목 차

[I. 추진개요]

1. 추진배경
2. 관련근거
3. 추진단계
4. 인권경영 추진 경과보고

[II. 세부추진사항]

1. 인권경영 추진현황
2. 인권영향평가 실시

[III.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3. 총평 및 향후계획

[IV. 부록]

1. 인권경영 선언문
2.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3.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I. 추진개요

1. 추진배경

■ 대외적 도입 배경

-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제정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정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제정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천·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권고”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 5개년 인권증진 행동전략 채택 (2021년~2025년)

■ 직접적 도입 배경

-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신설 (2017.7.14.)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반영 (2018.8.29.)

2. 관련근거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국가인권위원회, 2018.8)
- 2022 강릉문화재단 인권경영 추진계획 (2022.3.)

3. 추진단계

실 행 단 계	내 용
[1단계] 평가 지표 수립	기관 및 주요사업의 평가 지표 마련
[2단계]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추진부서에 평가 자료 공개 및 교육
[3단계] 평가 자료 확보	지표에 따른 증빙 자료를 취합 및 작성
[4단계] 평가 자료 제출	평가 자료 및 증빙 자료를 인권경영위원회에 제출
[5단계]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인권경영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
[6단계]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성과보고 및 모니터링 내용을 공개하여 확산

4. 인권경영 추진 경과 보고

2021

2월 9일

(재)강릉문화재단 인권경영 추진계획 (2021~2023) 수립

5월 14일

(재)강릉문화재단 인권경영 이행지침 및 시행 계획 수립

10월 13일

(재)강릉문화재단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10월 27일

(재)강릉문화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개최

12월 10일

(재)강릉문화재단 인권경영선언문 배포

2022

3월 21일

2022년 (재)강릉문화재단 인권경영 추진 계획 수립

7월 26일

2022 (재)강릉문화재단 인권영향평가 평가 지표 수립 및 실시 계획

7월 27일

(재)강릉문화재단 초청 특강 ‘인권경영 교육’ 진행

12월 28일

2022년 (재)강릉문화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및
인권영향평가 평가 실시

12월 29일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II. 세부추진현황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인권경영위원회의 역할
 - 인권경영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 필요한 사항 권고
 - 인권영향평가 수행
 - 인권침해 행위 조사 및 구제 심의 등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원
 - 총 7인 (외부위원 5인, 내부위원 2인)

구 분	성 명	소 속	임 기
위원장	한승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당연직(임원 1명 이상)
내부위원	이화정	(재)강릉문화재단 기획경영부장	당연직(직원 1명 이상)
외부위원	김남석	공인노무사김남석사무소 노무사	2021.10.27.~2023.10.26.
외부위원	박창우	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1.10.27.~2023.10.26.
외부위원	박선자	강릉예총 회장	2021.10.27.~2023.10.26.
외부위원	김은숙	지역사회정책연구소 오늘 학술편역	2021.10.27.~2023.10.26.
외부위원	이은경	마음숲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2021.10.27.~2023.10.26.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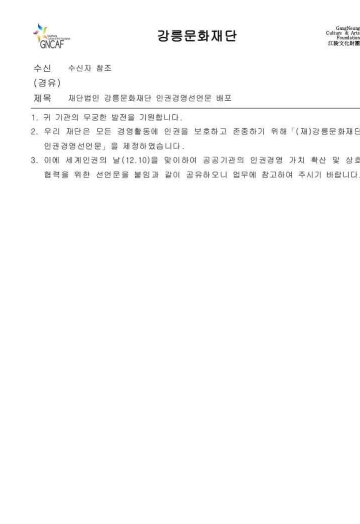
■ 인권경영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개최

- 일시: 2021. 10. 27. (수) 14:00
- 장소: 명주예술마당 본관 206호
- 안건: -(재)강릉문화재단 인권경영 이행지침
-(재)강릉문화재단 인권경영 선언문



■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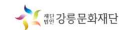
- 「강릉문화재단 인권경영 선언문」 공표 (2021. 12. 세계인권의 날)
- 「강릉문화재단 인권경영 선언문」 을 홈페이지에 게시
- 재단의 영향권 내의 모든 협력단체에 「강릉문화재단 인권경영 선언문」 배포



(재) 강릉문화재단 인권경영 선언문

강릉문화재단 임직원은 강릉시민이 행복한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구성원과 이해관계자가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한다.

-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하고 국내외 기준과 규범을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인종, 국적, 종교, 장애, 성별, 학력, 연령,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다양성을 존중한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단결 및 단체 교섭의 자유와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간 신뢰를 기반으로 노사상생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 하나, 우리는 공정한 경쟁에 업무를 수행한다.
- 하나, 우리는 시민, 예술가 및 예술단체, 협력기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어떤 인권침해도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역의 문화예술 가치 발굴과 일상 속 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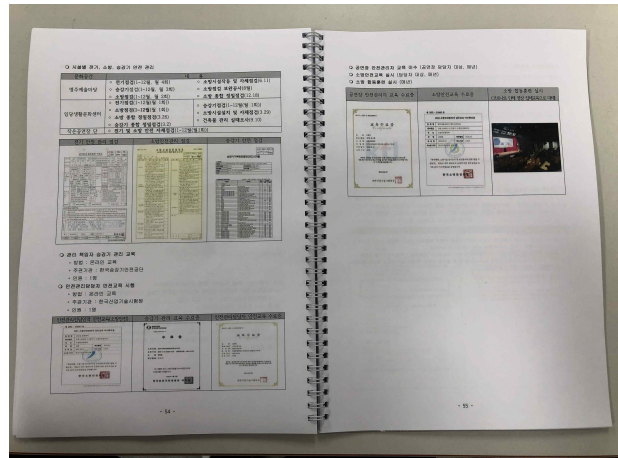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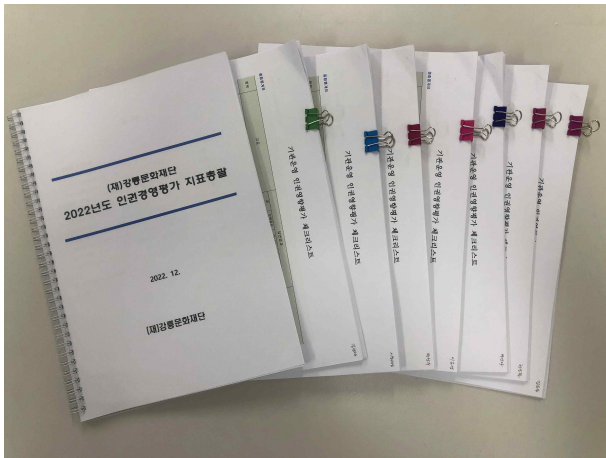
■ 초청 특강 ‘인권경영 교육’ 진행

- 일시: 2022년 7월 27일 (수) 오후 2시 (2시간)
- 장소: 명주예술마당 3층 공연장
- 내용: 인권이 깃든 일과 삶 (인권, 인권경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 2022년 인권경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및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일시: 2022년 12월 28일 (수) 14:00
- 장소: 명주예술마당 본관 206호
- 안건: (재)강릉문화재단 2022년 인권경영평가 시행



2. 인권영향평가 실시

■ 평가종류

구 분	기관운영 평가	주요사업 평가
내 용	기관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	기관의 주력사업 또는 대표사업 중에서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선정
분 야	기관 활동의 전반	강릉커피축제
평가지표	9개 분야 99개 지표	6개 분야 22개 지표

■ 평가지표

- 평가지표 선정방법

구 분	선정방법
기관운영 평가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매뉴얼’의 기관(기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으로서 거리가 먼 내용 (공기업의 하도급 관련)을 제외하여 선정
주요사업 평가	대표 사업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타기관의 지표와 비교한 후, 인권영향평가 담당부서인 기획홍보팀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

- 평가분야

구 분	평가분야
기관운영 평가	[분야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분야2] 고용상의 비차별 [분야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분야4] 강제 노동의 금지 [분야5] 아동노동의 금지 [분야6] 산업안전 보장 [분야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8] 환경권 보장 [분야9] 이해관계자인권 보호
주요사업 평가 (강릉커피축제)	[분야1] 노동환경 인권보장 [분야2] 사회적 약자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 제공 [분야3] 개인정보(인권) 침해 예방 [분야4] 비상대응계획 수립 [분야5] 행사 참여자의 인권보호 [분야6] 행사장 안전 보장

■ 평가 점수 산출 방식

- 인권영향평가 평가 점수: 분야별 점수의 평균값

예	보완필요	정보없음	아니요	해당없음
5점	3점	1점	0점	평가 제외

※ 분야별 점수: 항목별 해당하는 지표의 득점의 합을 100점 단위로 환산하여 평균한 값

※ 100점 단위 환산 방법 = $\left[\frac{\sum(\text{해당항목 지표점수})}{(5 \times \text{해당항목 지표수})} \right] \times 100$

III.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평가결과 총괄표

구분	분야	항목	점수	비고
종합점수			97.47	
분야1	평균		96.73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존중 정책선언	98.10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97.14	
		인권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97.14	
		인권경영성과	95.10	
		구제절차 마련	96.19	
분야2	평균		100	
	고용상 비차별	고용상 비차별	100	
		고용상 남녀비차별	100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100	
분야3	평균		96.56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95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100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94.67	
분야4	평균		97.50	
	강제 노동의 금지	강제 노동 금지	97.50	
분야5	평균		100	
	아동노동의 금지	연소자 고용 금지	100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평가제외	해당없음
분야6	평균		99.05	
	산업안전 보장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100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98.10	
분야7	평균		96.19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96.19	
분야8	평균		96.86	
	환경권 보장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96.57	
		환경정보의 공개	97.14	
분야9	평균		95.24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9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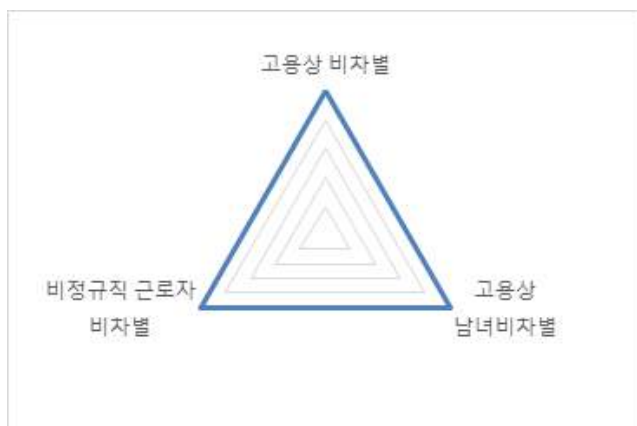
■ 분야별 분석

• [분야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항목	총계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인권존중 정책선언	42	40	2	0	0	0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28	26	2	0	0	0
인권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28	26	2	0	0	0
인권경영성과	49	44	4	1	0	0
구제절차 마련	42	38	4	0	0	0
계	189	174	14	1	0	0

• [분야2] 고용상 비차별



[평가의견]

• 현재 재단이 준용하는 지침 또는 규정에서 추가하여 ‘종교·장애·사회적 신분·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항목	총계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고용상 비차별	35	35	0	0	0	0
고용상 남녀비차별	42	42	0	0	0	0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21	21	0	0	0	0
계	98	98	0	0	0	0

• [분야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평가의견]

- 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 개최 빈도를 엄수해야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가 존재하므로 본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

항목	총계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28	24	1	1	0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35	29	0	0	0	6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35	13	2	0	0	20
계	98	66	3	1	0	28

• [분야4] 강제 노동의 금지

항목	총계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강제 노동 금지	56	52	1	0	1	2
계	56	0	0	0	0	2

• [분야5] 아동노동의 금지

항목	총계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연소자 고용 금지	35	25	0	0	0	10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56	0	0	0	0	56
계	91	25	0	0	0	66

• [분야6] 산업안전 보장

항목	총계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28	25	0	0	0	3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21	20	1	0	0	0
계	49	45	1	0	0	3

• [분야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항목	총계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21	19	2	0	0	0
계	21	19	2	0	0	0

• [분야8] 환경권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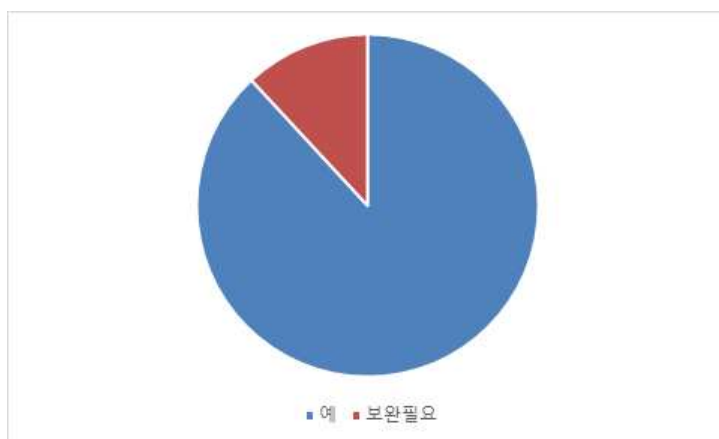


[평가의견]

- 측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지표
이므로 정량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항목	총계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49	45	4	0	0	0
환경정보의 공개	42	37	5	0	0	0
계	91	82	9	0	0	0

• [분야9]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평가의견]

- 정보수집 및 관리책임자를 지
정하여 이름을 공개하고 정보를
관리 및 운영하는 보완 필요
- 정보수집 관리 책임자를 분명
하게 할 필요가 있음

항목	총계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42	37	5	0	0	0
계	42	37	5	0	0	0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평가결과 총괄표

구분	분야 및 항목		점수	비고
종합점수			97.40	
분야1	제14회 강릉커피축제	노동환경 인권보장	92.38	
분야2		사회적 약자에게 동등한 참여기회 제공	100	
분야3		개인정보(인권) 침해 예방	94.29	
분야4		비상대응계획 수립	100	
분야5		행사 참여자의 인권 보호	97.14	
분야6		행사장 안전 보장	100	

■ 총괄 분석



[평가의견]

- CCTV 설치 등 축제 현장 관리에 대한 안내문 게시의 보완이 필요하여 보임
- 고객 응대에 대한 매뉴얼 비치 보완 필요
- 업무 스트레스 관리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분야 및 항목	총계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노동환경 인권보장	21	17	4	0	0	0
사회적 약자에게 동등한 참여기회 제공	28	28	0	0	0	0
개인정보(인권) 침해 예방	28	25	2	1	0	0
비상대응계획 수립	21	21	0	0	0	0
행사 참여자의 인권 보호	28	26	2	0	0	0
행사장 안전 보장	28	28	0	0	0	0
계	154	145	8	1	0	0

3. 총평 및 향후 계획

■ 기관운영 총평

- 현 운영에 대해서는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과 시도가 보임
- 평가 지표에 따라 시행 초기 이후 시행해야하는 영역에서는 전체적인 보완 권고
- 노사협의체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등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책임과 관리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우선사항으로 보임

■ 주요사업 총평

-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대해 촘촘한 안내와 관리를 추가한다면 더욱 성장한 축제로 거듭날 것으로 보임
- 주요사업인 강릉커피축제 역시 개인정보 수집(CCTV) 등에 대한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 직원과 참여인력 등 업무 스트레스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 향후계획

- 인권경영의 절차에 따라 구체절차를 보완
 - 미흡한 구체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및 시행
-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에 대한 인권을 보장
 - CCTV 관리를 철저히하기 위한 운영 교육 실시 및 가이드 제시
 - 개인정보 등 정보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지속적 관리 실시
- 직원 인권 보호
 - 노사협의체 운영을 규정대로 준수하여 실시
 - 부당한 요구나 언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규정이나 제도 마련

IV. 부록

(재) 강릉문화재단 인권경영 선언문

강릉문화재단 임직원은 강릉시민이 행복한 문화복지 실현하기 위한 기관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구성원과 이해관계자가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하고 국내외 기준과 규범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종, 국적, 종교, 장애, 성별, 학력, 연령,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단결 및 단체 교섭의 자유와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간 신뢰를 기반으로 노사상생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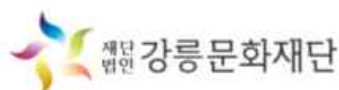
하나, 우리는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 예술가 및 예술단체, 협력기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어떤 인권침해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역의 문화예술 가치 발굴과 일상 속 문화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종합통계표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5점)	보완필요 (3점)	아니오 (1점)	정보없음 (0점)	해당없음 (평가제외)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	고용상의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4	강제 노동의 금지						
5	아동노동의 금지						
6	산업안전 보장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8	환경권 보장						
9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소계							

평가위원 :

(인)

세부 평가 지표

▶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5점)	보완필요 (3점)	아니오 (1점)	정보없음 (0점)	해당없음 (평가제외)	
인권존중 정책선언 (가)	1	회사의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2	인권정책선언은 회사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3	회사의 인권정책선언은 회사내부와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4	회사의 인권정책선언은 해당 회사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소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5점)	보완필요 (3점)	아니오 (1점)	정보없음 (0점)	해당없음 (평가제외)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나)	1	회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2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3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회사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4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소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5점)	보완필요 (3점)	아니오 (1점)	정보없음 (0점)	해당없음 (평가제외)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위한 필요조치 (다)	1	회사는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2	회사는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3	회사는 인권 준수 감시장치를 마련하였다.						
	4	회사는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소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5점)	보완필요 (3점)	아니오 (1점)	정보없음 (0점)	해당없음 (평가제외)	
인권경영성과 (라)	1	회사는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2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3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4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5	보고는 회사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6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7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소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5점)	보완필요 (3점)	아니오 (1점)	정보없음 (0점)	해당없음 (평가제외)	
구제절차 마련 (마)	1	회사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2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 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3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4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5	피해자가 회사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노력한다.						
	6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소계								

▶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5점)	보완필요 (3점)	아니오 (1점)	정보없음 (0점)	해당없음 (평가제외)	
고용상 비차별 (가)	1	회사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2	회사는 노동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3	회사는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4	회사는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5	회사는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소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5점)	보완필요 (3점)	아니오 (1점)	정보없음 (0점)	해당없음 (평가제외)	
여성 근로비차별 (나)	1	회사는 여성노동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2	회사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3	회사는 임금 외의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4	회사는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5	회사는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6	회사는 여성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소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5점)	보완필요 (3점)	아니오 (1점)	정보없음 (0점)	해당없음 (평가제외)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다)	1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사업장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2	회사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회사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3	회사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소계								

▶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5점)	보완필요 (3점)	아니오 (1점)	정보없음 (0점)	해당없음 (평가제외)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가)	1	회사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						
	2	회사는 노동조합 등을 통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노동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4	회사는 정기적으로 노동자의 대표와 단체 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소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5점)	보완필요 (3점)	아니오 (1점)	정보없음 (0점)	해당없음 (평가제외)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나)	1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2	노동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3	노동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4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노동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5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소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5점)	보완필요 (3점)	아니오 (1점)	정보없음 (0점)	해당없음 (평가제외)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다)	1	회사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2	회사는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	회사는 경영 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노동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4	회사는 노동자 대표가 단체 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회사 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5	회사는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 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한다.						
소계								

▶ 분야 4. 강제 노동의 금지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5점)	보완필요 (3점)	아니오 (1점)	정보없음 (0점)	해당없음 (평가제외)	
강제노동 금지 (가)	1	회사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2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3	회사는 노동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4	회사는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 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5	회사는 노동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 노동을 강요 하지 않는다.						
	6	회사는 노동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						
	7	노동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8	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 통지 이후에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						
소계								

▶ 분야 5. 아동노동의 금지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5점)	보완필요 (3점)	아니오 (1점)	정보없음 (0점)	해당없음 (평가제외)	
연소자 고용 금지 (가)	1	회사는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3	회사는 교육프로그램을 방지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						
	4	회사는 서류를 통해 노동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5	출생증명서가 없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경우, 적절하게 나이를 확인하는 대안적 방법을 고려한다.						
소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5점)	보완필요 (3점)	아니오 (1점)	정보없음 (0점)	해당없음 (평가제외)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나)	1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한다.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4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5	의무교육 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이 중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회사를 아동들의 건강,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작업을 규정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7	회사는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에 18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8	연소자들이 노동에 적합한 체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소계								

▶ 분야 6. 산업안전 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5점)	보완필요 (3점)	아니오 (1점)	정보없음 (0점)	해당없음 (평가제외)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가)	1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2	회사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3	임신을 한 노동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들이 회사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소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5점)	보완필요 (3점)	아니오 (1점)	정보없음 (0점)	해당없음 (평가제외)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나)	1	회사는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2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						
	3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 한다.						
소계								

▶ 분야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5점)	보완필요 (3점)	아니오 (1점)	정보없음 (0점)	해당없음 (평가제외)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가)	1	회사는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2	회사는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소계								

▶ 분야 8. 환경권 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5점)	보완필요 (3점)	아니오 (1점)	정보없음 (0점)	해당없음 (평가제외)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가)	1	회사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2	회사는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3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4	회사는 회사 활동뿐만 아니라,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5	회사는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노동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소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5점)	보완필요 (3점)	아니오 (1점)	정보없음 (0점)	해당없음 (평가제외)	
환경정보의 공개 (나)	1	회사는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2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 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소계								

▶ 분야 9.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5점)	보완필요 (3점)	아니오 (1점)	정보없음 (0점)	해당없음 (평가제외)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가)	1	회사는 이해관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회사가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이해관계자 정보를 수집 및 관리 지침이 마련 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3	이해관계자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4	이해관계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5	이해관계자 정보는 이해관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6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소계								

종합통계표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5점)	보완필요 (3점)	아니오 (1점)	정보없음 (0점)	해당없음 (평가제외)	
1	노동환경 인권보장						
2	사회적 약자에게 동등한 참여기회 제공						
3	개인정보(인권) 침해 예방						
4	비상대응계획 수립						
5	행사 참여자의 인권 보호						
6	행사장 안전 보장						
소계							

평가위원 : (인)

세부 평가 지표

▶ 분야 1. 강릉커피축제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5점)	보완필요 (3점)	아니오 (1점)	정보없음 (0점)	해당없음 (평가제외)	
노동환경 인권보장 (가)	1 노동자의 법정 근무시간,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2 노동자의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3 이용객 또는 방문객의 악성 민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소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5점)	보완필요 (3점)	아니오 (1점)	정보없음 (0점)	해당없음 (평가제외)	
사회적 약자에 게 동등한 참여기 회 제공 (나)	1	정보약자를 배려한 행사 참여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2	교통약자의 시설물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다.						
	3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업무적 절차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4	외국인 이용자를 위하여 다국어로 된 안내가 제공되고 있다.						
소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5점)	보완필요 (3점)	아니오 (1점)	정보없음 (0점)	해당없음 (평가제외)	
개인정보 (인권) 침해 예방 (다)	1	예약 및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다.						
	2	시설내에 설치되어있는 CCTV는 잘 보이는 곳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						
	3	부적절한 고객응대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모니터링하였다.						
	4	인근 지역 주민의 사적 침해를 최소화 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소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5점)	보완필요 (3점)	아니오 (1점)	정보없음 (0점)	해당없음 (평가제외)	
비상 대응 계획 수립 (라)	1	노동자, 관람객의 안전과 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했다.						
	2	재단은 비상상황 발생의 경우 즉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었다.						
	3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 보험에 가입하였다.						
소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5점)	보완필요 (3점)	아니오 (1점)	정보없음 (0점)	해당없음 (평가제외)	
행사 참여자의 인권 보호 (마)	1	행사 운영 과정에서 수집한 참여자의 개인 정보 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다.						
	2	행사 참여자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3	행사 참여자의 종교, 인종,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4	행사 참여자를 위한 고객 응대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다.						
소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5점)	보완필요 (3점)	아니오 (1점)	정보없음 (0점)	해당없음 (평가제외)	
행사장 안전 보장 (바)	1	재단은 모든 행사장 운영으로 인한 안전 위험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한다.						
	2	행사 운영 시에 행사장소의 응급상황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3	전염병 등에 대한 방역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4	행사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소계								

